

2022. 1.

『2022년도 농업분야』 주요사업 지원계획

그는, 제 주 시 [농 정 과]

목 차

□ 일 반 현 황 1
□ 2022년 농업분야 비전/목표/전략과제 3
□ 2022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현황 4
□ 2022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5
[농정 분야] 7
○ 농업성공대학(원) 운영 지원사업7
○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8
○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9
○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10
○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11
○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12
O 농민수당 지원사업13
【감귤(과수) 분야】 14
○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4
○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15

0	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16
0	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17
O	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18
0	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19
0	감귤원(하우스, 노지) 관수시설 지원사업 20
0	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21
0	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 22
O	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23
0	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 24
0	감귤원 원지정비 지원사업25
0	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26
0	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… 27
0	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 28
0	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 29
0	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30
0	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 31
0	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32
0	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 33

[식품산업 분야] 34
O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지원사업34
○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35
○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36
○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37
○ 기본형(소농, 면적) 공익직불사업 38
○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(초지) 39
○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(농지)40
○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41
[원예특작 분야] 42
○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42
○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43
○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44
○ 친환경·웰빙작물 생산·유통단지 조성 지원사업 ···· 45
○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46
○ 신재생에너지시설(공기열) 지원사업 47
○ 채소·호훼하우스 자동화시설(자동개폐기, 환풍기 등) 지원·· 48
○ 정예소득작목단지 조성사업49
○ 친환경비료(발효액비) 지원사업 50
○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51

○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52
○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53
O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54
○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55
○ 채소・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 56
○ 채소・화훼 비닐하우스 시설 지원사업 57
[유통지원 분야] 58
○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사업58
○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59
○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60
○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61
○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62
○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63
○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64
○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65
○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66
○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67
○ 토양개량제 지원사업68
○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69
○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70
○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71
○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72

[농지관리 분야] 73
○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73
○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73
○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75
□ 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77
○ 농민수당 지원사업 신규 추진79
○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상향·· 80
○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단가 상향 82
○ 감귤원 방풍수 정비 확대 지원 83
○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(지원대상 및 지원품목) 확대 · · 84
○ 감자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85
○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 대상자 확대 ·· 86
○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대상 농기계 확대87
○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88
○ 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 … 89
○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 개정 90
○ 농지법 등 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91

일 반 현 황

1 기구 및 정·현원

O 기 구

농수축산경제국

농 정 과

농정	성팀	김	귤팀	식품산	업팀	원예특각	악팀	유통지원	원팀	농지괸	리팀	농업기	기반팀	

〇 정·현원

	그 급 게 일 반 직							고ㅁ지	Ē		
	분	계	소계	입	5급	6급	7급	8급	9급	공무직	0177
정	원	34	32	1	1	8	7	10	5	2	
현	원	34	32	1	1	8	9	7	6	2	

○ 팀별 주요업무

딭	남 당	별	주요업무	비고
사	정	팀	○ 농림축산식품사업 총괄, 농업인 단체 육성 ○ 농어촌진흥기금, 농업인 복지 등	
감	귤	팀	○ 과수산업 육성 총괄, FTA기금 지원사업 총괄 ○ 감귤 유통, 고품질 감귤 생산, 기타과수 지원 등	
식 픋	푹 산 (업 팀	○ 식품산업 육성, 해올랫공동브랜드관리,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○ 직접지불사업(기본형 공익직불, 경관보전, 친환경농업)	
원 0	계 특 3	작 팀	○ 친환경농업·원예특용작물 육성 지원 ○ 생산시설 및 원예시설 현대화 지원 등	
유통	통지원	원 팀	○ 농산물 유통 시설·장비 지원 등 ○ 농업재해,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등	
농 기	디관히	의 팀	○ 농지관리, 농업법인 사후관리, 농지전용 ○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, 농어촌민박, 후계농업인력 육성 등	
상	업기 1	반 팀	O 배수개선사업·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O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등	

2 일반농업 현황

□ 농업 세력 ('20년)

○ 농업조수입 : 6,373억원 ※ 도 전체 1조 6,538억원의 38.5%

○ 농업인구: 17,863호·48,024명 ※도 전체(80,141명)의 59.9%

○ 경지면적: 29,268ha(밭 29,263, 논 5) ※도 경지면적의 49.9%

○ 농기계보유 : 8종·16,148대(경운기 7,092, 관리기 5,279, 기타 3,777)

□ 과수분야 ('20년)

○ 감 귤: 10,531농가·6,757ha(노지 5,324, 가온 16, 월동 306, 만감류 1,111)

○ 기타과수 : 529농가·259ha(참다래129, 단감 43, 매실 18, 블루베리 25 기타 44)

O 감귤선과장: 136개소(농협 32, 감협35, 유통인 48, 영농법인 21)

□ 밭작물분야 ['20년]

○ 식량작물 : 7,405농가·9,146ha(콩3,855, 보라2,395, 기장1,044, 감자786, 메밀678, 기타388)

○ 월동채소 : 9,001 농가·7,251ha(%배추1,256 월동무1,764 당근1,275 브로콜리1,014 기타1,942)

○ 원예전문생산단지 : 5개소(화훼 2, 과채 2, 과수 1)

○ 친환경농업지구 : 22개소(한림 2, 애월 7, 구좌 5, 조천 3, 한경 2, 동지역 3)

- 친환경인증 : 751호 · 1.025ha(유기 482, 무농약 543)

□ 유통시설 ('20년)

○ 농산물산지유통센터 : 19개소(농협 16, 영농법인 3)

○ 친환경농산물전문판매장 : 23개소(농협3, 대형마장, 초롹)을 생협5, 기타4)

2022년 비전 / 목표 / 전략과제

비 전

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

목 표

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「희망경제도시」

전략과제

역시적 · 미대 IS적 왕을 통한 자속성이는 강한 왕업 왕성

실 행 계 획

추 진 계 획

① **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으로** 살고싶은 복지농촌 조성



- ① 경쟁력 갖춘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복지증진으로 선진농업 구현
- ② 농업직불금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농업 공익적 기능 증진
- ② 과수신업 및 특화품목 육성으로 농업의 고부가가치 창출



- ① 지속성장을 위한 과수생산체계 확충 및 수급 조절을 통한 농가소득 안정화
- ② 소규모 지역특화작물 육성 및 현대화 농업경영 생산기반 확충
- ③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및 산지유통 확대로 가격 경쟁력 강화



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② 반작물 영농화경 개선 및 상지유통시

① 친환경·GAP농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

- ② 발작물 영농환경 개선 및 산지유통시설 확대로 가격 경쟁력 강화
- ④ 제주 농지의 기능강화 및 재해예방을 위한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



- ①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·이용 정립
- ②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

2022년 1차산업 분야 예산 현황

1 예산 총괄

(단위:백만원)

(단위 : 백만원)

부서별		2022년도 본예산액(A)	전체예산 대비(%)	2021년도 본예산액(B)	전체예산 대비(%)	증감액 (A-B)	증감률 (%)	
	계		208,980	100	202,864	100	6,116	3.0
농	정	과	94,649	45.3	82,757	40.8	11,892	14.4
해	양 수	산 과	54,589	26.1	54,585	26.9	4	0.01
축	산	과	36,565	17.5	40,609	20.0	△4,044	△9.9
경	제 일 자	리과	23,177	11.1	24,913	12.3	△1,736	△7.0

※ 제주시 전체예산(18,722억원) 중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2,090억원 → 제주시 11.2% 차지

□ 재원별 현황

재원별	부서별 예산편성 상황								
세권될	계 농정과 해양수산과		축산과	경제일자리과					
계	208,980	94,649	54,589	36,565	23,177				
국 비	39,022	13,965	14,737	10,120	200				
균 형 발 전	10,499	1,230	5,604	-	3,665				
기 금	51,014	29,574	5,024	7,081	9,335				
자 체 재 원	81,475	42,523	20,528	9,840	8,584				
도 비	26,970	7,357	8,696	9,524	1,393				

2022년 주요사업 지원계획

〈일러두기〉

○ 본 책자는 제주시가 2022년 본예산을 기준으로 추진 예정인 농업 분야 주요사업 지원계획으로서 농업인, 농업법인 등을 대상으로 사업신청 안내를 위해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.

※ 유의사항

: 본 책자의 사업별 지원 내용은 향후 중앙부처나 제주특별자치도 등의 사업지침 변경 또는 제주시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내용(추진일정, 지원대상, 지원단가, 지원예산 등)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[농정분야]

1 농업성공대학(원) 운영 지원사업

- ❖ 글로벌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적 · 창의적인 농업인 육성을 통한 FTA 대응방안 모색 및 제주지역 농업경쟁력 강화
- ❖ 수요자 중심의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수요 충족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· 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- 운영기간 : 2022. 3월 ~ 11월
- 교육인원 : 500명(농협별 50명 내외 × 10개 농협)
- 사 업 비 : 243백만원(도비 170, 자부담 73)
- 운영주체(안): 제주시,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
- 교육장소(안) : 지역농협(농협회의실 등 활용)
- 교육운영 : 연간 25주(총 50시간) 매주 1회(2시간)
 - 교육내용 : 농업경영, 농업 마케팅, 농업기술교육 등
 - 강사선정 : 농업 관련 학계 전문가 및 선도 농업인 등
 - ※ 지역농협 사정에 따라 시간 배정은 달라질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수강 신청기간 : 2022. 3월 ~ 4월
 - ※ 신청기간 별도 공지(신문, 언론 등)
- O 신청 접수장소 : 지역농협
 - 지역농협에 비치된 수강신청서 작성 후 제출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2, 3311) 농협중앙회제주지역본부(☎ 720-1221) 및 각 지역농협

2 출산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

❖ 여성 농어업인 출산(예정)시 농어가도우미가 영농(어)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농(어)중단방지 및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

□ 지원근거
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의2(여성농어업인 도우미 지원사업의 시행)
-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11조(사업지원 등)

□ 사업내용

- 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사 업 량 : 28명
- 사 업 비 : 175백만원(자체재원 140, 자부담 35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신청일 기준 90일전부터
 - 영농(어)에 종사하는 출산(예정)한 전업 여성농어업인
- 지원내용 : 출산(예정) 여성농어업인에게 도우미 이용 금액의 80% 지원
- O 지원기준
 - 1일 지원액 : 56,000원 🖙 지원기준단가 70,000원의 80%
 - 1인 최고 한도액: 5,040,000원 🖙 70,000원×90일(최대 이용일수)×80%
 - ※ 지원기준(지원액, 지원기준단가)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 변경될 수 있음
 - ※ 1일 작업시간 8시간 이상일 경우 1일 이용액 전액, 8시간 미만일 경우 시간급 계산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O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- 신 청 자 : 출산(예정) 전업적 여성농어업인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

3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

❖ 여성농업인의 고충 상담, 영유아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, 교육· 문화활동사업 운영으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여건 개선

□ 지원근거

- 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
-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사 업 량 : 5개소(한림·애월·김녕·함덕·한경)
- 사 업 비 : 499백만원(자체재원 499)
- 지원기준 : 개소당 99백만원 이내
 - 센터 프로그램 실정 및 운영에 따라 지원사업비 조정
- 지원대상 : 공고일 이전 제주특별자치도 지정승인 및 법인설립이 완료된 센터
 - ※ 해당지역 거주 여성농어업인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각종 문화·복지·교육 프로그램 참여가능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프로그램 수강 신청기간 : 연중(수시)
- 신청접수장소 : 여성농어업인센터 ※ 센터별 프로그램 상이

구 분	한림센터	애월센터	김녕센터	함덕센터	한경센터
주 소	한림북동길 7 한림중앙상가 205호	일주서로 6266	김녕로 7길 14	함덕18길 32-1 드라발리 103동자하	신한로 81
연락처	070-8801-6122	799-1235	783-5031	784-6988	773-1554

문의	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	
•	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 ,	

4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사업

 ❖ 사망・장애・질병 등 농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 피해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공제 혜택을 모든 농업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농협과 공동 부담으로 공제료 지원

□ 지원근거

○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공제상품명 : 2022 NH농협생명 농업인안전재해보험

○ 지원금액 : 505백만원(자체재원 505)

※ 국비[국가직접지원사업] 50%, 도비 25%, 자부담 25%

- O 추진방침
 - 지역농협을 통해 NH농협생명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을 신청한 농업인
 - 공제료는 NH농협생명 제주총국을 통해 일괄 지원 및 정산
 - 공제료는 개인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농협 실정과 가입 농가 희망에 따라 부부형 지원 가능
 - 공제료 지원 비율은 가입 공제료의 25%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공제가입 기간 : 가입일로부터 1년간

○ 신 청 자 : 공제 가입일 현재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, 영농활동 종사

하는 만 1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(※가입상품에 따라 상이)

O 신청장소 : 거주지 지역농협

문의 │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

5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

❖ 농업·임업·축산업·수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업인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·공급하여 영농어안정 도모

□ 설치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제3항
-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, 동 시행규칙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융자규모 : 5,000억원(상반기 2,500, 하반기 2,500) ※ 2021년 기준
- 지원대상: 제주도 내에서 농·임·축·수신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어가 및 생신지단체
- 융자 한도액 [농어가 :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/생산자 단체 :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해
- 융자기간 및 상환 : (운전자금) 2년 이내에 상환(1회에 한해 2년 연장) (시설자금)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(10회)
- 융자금의 이율 : 0.5% (융자대상자의 부담이율) ※ 지원기준은 2022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〈제외대상〉

- ☞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 중인 기금 사업을 받고 있는 자
- 때 배우자 및 본인이 국가가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(교직원 포함)이거나 농(축)수산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
- ☞ 기타 농업 외 소득이 37백만원(전년도 기준) 이상인 자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신청기간 : 연 2회 (상반기 2~3월 예정, 하반기 7~8월 예정)
- 신청장소 : 주소지 읍·면사무소, 동 주민센터
- O 융자취급 금융기관 : 농(축)·수협, 제주은행, 새마을금고, 산림조합, 신협
- 신 청 자 :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어가 및 생산자 단체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

6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사업

◆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 및 여성농업인의 자긍심 고취

□ 지원근거

- 「여성농어업인 육성법」제10조 및 제11조
- 「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」제10조 및 제11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7,000명(여성농업인 29,000여명의 60% 수준)

○ 사 업 비 : 2,600백만원(도 전체)

○ 지원기준 : 1인당 100~150천원(※추경예산 확보시까지 탄력적용)

○ 지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 거주(주민등록 필수)하면서 주소를 두고

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으로서 시업시행연도(2022.1.1.) 기준 만 20세 이상~ 만 75세 미만인 자

〈제외대상〉

☞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, 지방세를 체납한 자

☞ 허위 또는 부당수령자 중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

☞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및 문화누리카드 발급 대상자

○ 지원내용 :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 45개 문화복지 분야에 사용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2월 ~ 3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
○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읍면동

○ 카드발급 절차 : 사업신청서 접수 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카드발급 안내

문의 세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

7 농민수당 지원사업

❖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・농촌환경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□ 지원근거

○ 지원근거: 「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56,000명 (추정)

○ 사 업 비 : 22,400백만원 (도 전체)

○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3년이상 계속 제주도내 주소를

두고 실제 거주하며, 2년이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

있는 전업 농민

○ 지원단가 : 농민 1인당 400,000원 (현금 또는 지역화폐)

〈제외대상〉

☞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

☞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
☞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
☞ 최근 2년 내 농지법, 산지관리법, 기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년 1월 ~ 7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
○ 신청장소 : 거주지 관할 읍면동

○ 제출서류 : 신청서,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,

종합소득금액증명원, 경작사실 확인서, 농민수당 지급

동의서(복지급여 수급자만 해당) 등

※ 지원기준은 2022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(☎ 728-3314, 3311)

[감귤(과수) 분야]

1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

❖ 감귤이외 기타과수 재배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비 및 재해예방용시설 지원으로 감귤 대체 작물 육성 및 고품질 과실 생산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~12월
- 사 업 량 : 12개 시업(자동개폐기, 환풍기, 송풍팬, 온풍난방기, 재난방지시스템 등)
- 사 업 비 : 500백만원(도비 300, 자부담 200)
- 지원대상 : 기타과수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
- 지원단가 : 자동개폐기 8,280천원/0.5ha, 환풍기 10,270천원/0.5ha,

송풍팬(교반기) 12,920천원(13,680)/0.5ha,

온풍난방기 9,300천원/대, 재난방지시스템 1,100천원/대

- ※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단가에 준함
-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- 신청장소 : 과원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-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 - 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세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7, 3331)

2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

❖ 과수 하우스의 이상기온, 정전 등 이상 발생 시 자동 통보체계 구축으로 농가 피해 예방 및 농가 안전 영농 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~12월

O 사 업 량 : 재난방지시스템 15대

○ 사 업 비 : 16.7백만원(도비 10, 자부담 6.7)

○ 지원대상 : 과수하우스 재배 농가 중 사업 희망 농가

○ 지원단가 : 대당 1,100천원(보조 660천원) 이내

○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○ 신청장소 : 과원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

3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

❖ FTA체결 등 개방확대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의 연중 생산을 위하여 노지 재배 위주의 생산체계를 시설 재배로 전환하여 개방 확대에 대응한 감귤산업 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2ha

○ 사 업 비 : 4,410백만원(기금 882, 도비1,323, 융·자담2,205)

○ 지원대상 : 감귤비가림하우스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
※ 자동개폐기 포함 지원, 빗물처리(물탱크) 설치 의무화'19년부터 최근 10년('12~'21년)내 5,000㎡이상 지원받은 경영체는 지원 제외

O 지원단가

문의

- 비가림하우스 : 228,106천원/0.5ha - 감리비 : 4,334천원/0.5ha

- 빗물이용시설 : 31,626천원/개소 ※100톤 기준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33ha(3,300㎡)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지점

4 감귤하우스 비상발전기 지원사업

❖ 정전시 환풍기, 난방기 등 시설장비의 안정적 가동으로 시설재배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여건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비상발전기 40대

○ 사 업 비 : 428백만원(기금 86, 도비 128, 융자담 214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비상발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(30kw) 10,690천원/대, (20kw) 10,063천원/대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 문의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

5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

❖ 갑작스런 날씨 변화에 따른 하우스 창을 열고 닫는 불편 해소 및 자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농업재해 위험 감소와 농가의 안전한 영농 생산 여건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18ha

○ 사 업 비 : 282백만원(기금 56, 도비 85, 융자담 141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1ha당 16,560천원(92대 기준) ☞ 대당 180천원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lha(92대)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문의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세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

6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

❖ 노후화 된 감귤하우스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영농경비 부담 완화.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5ha

○ 사 업 비 : 440백만원(기금 88, 도비 132, 융자담 220)

○ 지원대상 : 본인 소유 토지로 보조금을 받지 않은 20년 이상 된

노후 하우스 개보수 지원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0.5ha당 43,978천원 ☞ ㎡당 8,796천원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7, 3331) 문의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

7 감귤원(하우스, 노지) 관수시설 지원사업

◆ 관수시설을 지원하여 인위적 수분 조절 및 농약 살포 등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- 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O 사 업 량 : 9.7ha
- 사 업 비 : 180백만원(기금 36, 도비 54, 융자담 90)
- 지원대상 : 감귤원(하우스, 노지)내 관수시설을 희망하는 농가
- O 지원단가
 - 하우스 수동 스프링클러 : 18,520천원/lha
 - 하우스 수동 점적관수 : 10,120천원/lha
 - 하우스 승강형 스프링클러 : 29,620천원/0.5ha
 -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 : 12,400천원/lha
 - 노지감귤원 승강형 살포기 : 39,040천원/lha
-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- O 지원하도
 - (노 지) : 농가당 2ha(단,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1ha)
 - (하우스) : 농가당 lha(단, 승강형 살포기는 농가당 0.5ha)
 - 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 - 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-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-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6, 3331) 문의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

8 감귤원 방풍망시설 지원사업

❖ 방풍망 설치로 강풍과 병해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투광율향상 및 작업편의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생산기반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2ha

○ 사 업 비 : 242백만원(기금 48, 도비 73, 융자담 121)

○ 지원대상 : 감귤원에 방풍망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25,182천원/lha(500m기준) ☞ m당 50,365원

※ 원지정비사업 신청농가('18 ~ '21년 원지정비 사업 완료 농가 포함)에 한하여 500m(0.5ha) 기준으로 지원 가능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사업량이 60m이상인 경우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6, 3331)

9 감귤원 농산물운반시설 지원사업

❖ 고령화된 농촌의 작업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와 노동력 절감을통한 영농 환경 개선으로 감귤농가 소득증대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8ha

○ 사 업 비 : 88백만원(기금 18, 도비 26, 융자담 44)

○ 지원대상 : 감귤원에 농산물운반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사업장 1개소당 운반기 1대 지원

- (동 력): 5,560천원/0.5ha(운반기 3,800천원 레일 1,760천원)

- (무동력) : 4,155천원/0.5ha(운반기 678천원 레일 3,477천원)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노지감귤원은 2ha, 시설하우스는 1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문의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6, 3331)

10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

❖ 하우스 내 자동화된 병해충 방제시설 설치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약 방제에 따른 안전성 확보로 감귤농가 영농화경 개선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2ha

○ 사 업 비 : 1,226백만원(기금 245, 도비 368, 융자담 613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무인방제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O 지원단가

- 무인방제시설(일반) : 54,200천원/ha

※ 시공업체별 시공방법 다양하여 지원단가 한도내에 시공업체의 견적가격에 따라 농가가 선택하여 사업 추진

- 무인방제시설(이동식) : 16,680천원/ha

- 감리비(총사업비 50백만원 이상) : 1,544천원/ha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lha 범위 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

문의

| 11 | 감귤하우스 환풍기시설 지원사업

❖ 여름철 일시적 기온상승에 따른 고온 및 재해발생 사전 예방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보장과 하우스 내 작물 생육환경 개선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21ha

○ 사 업 비 : 434백만원(기금 87, 도비 130, 융자담 217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환풍기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0.5ha당 10,270천원(13대 기준) ☞ 대당 790천원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(13대)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문의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6, 3331)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지점

12 감귤원 원지정비(우량품종갱신, 성목이식) 지원사업

◆ 노지감귤 관행 재배로는 품질(당도) 향상에 한계가 있어, 기존 관행 재배 과원을 고당도 감귤 생산이 가능한 과원으로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O 사 업 량 : 33ha
- 사 업 비 : 2,700백만원(기금 540, 도비 1,350, 융자담 810)
- 지원대상 : 감귤원의 원지정비(우량품종갱신, 성목이식)를 희망하는 농가
- O 지원단가
 - 우량품종갱신사업 : 95,774천원/ha
 - · 품종갱신 : 84,774천원/ha, 방풍수 정비 : 11,000천원/ha
 - 성목이식사업 : 81,822천원/ha
 - 원지정비 : 70,822천원/ha, 방풍수 정비 : 11,000천원/ha
-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50%, 융자 20% 자부담 10%
- 지원한도 : 농가당 노지감귤원은 제한없음, 시설하우스는 lha 범위 내 지원 (노지, 시설 모두 최소 1,000㎡이상 지원)
 - 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 - 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-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-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 문의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지점

13 감귤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

◆ 하우스 내부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작물 생육환경 개선 및 냉해 방지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고품질 감귤 생산여건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15ha

○ 사 업 비 : 388백만원(기금 78, 도비 116, 융자담 194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송풍팬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O 지원단가

- 송풍팬 : 12,920천원/0.5ha(130W 38대, 50~60W 76대)

- 공기교반기 : 13,680천원/0.5ha(130W 38대, 50~60W 76대)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7, 3331)

문의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☎ 720-1368) 및 각 지역농협

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(☎ 735-1933) 및 각 감협지점

14 감귤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지원사업

❖ 겨울철 일시적 기온하강에 따른 감귤 동해 및 냉해 등 자연재해 사전 예방으로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업량: 30대

○ 사 업 비 : 279백만원(기금 55, 도비 84, 융자담 140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에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

○ 지원단가 : (20만kcal) 7,100천원, (25만kcal) 8,200천원, (30만kcal) 9,300천원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개소당 1대씩 최대 2대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

15 감귤하우스 보온커튼시설 지원사업

❖ 겨울철 일시적 기온 하강에 따른 냉해·동해 재해발생 사전 예방으로 하우스 시설 내 작물 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

□ 지원근거

O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5ha

○ 사 업 비 : 566백만원(기금 113, 도비 170, 융자담 283)

○ 지원대상 : 감귤하우스 내 보온커튼(동·냉해 방지용)설치 희망농가

※ 단, 난방 시설된 하우스 감귤원은 제외

○ 지원단가 : 56,567천원/0.5ha

- 보온커튼 : 55,000천원/0.5ha - 감리비 : 1,567천원/0.5ha

○ 지원비율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
○ 지원한도 : 농가당 0.5ha 범위내 지원

※ 지원단가는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1. 10. 1. ~ 10. 15.(신청마감)

※ 2023년 지원사업 신청기간 : 2022. 9월 ~ 10월 예정

○ 신청장소 :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(지역농협),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|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5, 3331)

16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사업

❖ 생산성이 낮은 고령목, 당도와 품질이 떨어지는 감귤원 등을 원지정비 (품종갱신 및 성목이식) 추진 시 농가소득 부재에 따른 생산비 보전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~12월

O 사 업 량 : 45.5ha

○ 사 업 비 : 319백만원(자체재원 319)

○ 지원대상 : FTA기금 감귤원 원지정비사업 완료농가

○ 지원내용 : 원지정비(성목이식 및 품종갱신) 참여 필지 생산비 보전

○ 지원단가 : 7,000천원/ha (㎡당 700원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월~ 11월

○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(농지소재지 읍면동)

○ 신청방법 : FTA기금 원지정비 지원사업 완료자에 한해 사업 신청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

17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

❖ 감귤원에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투과 감소,
 양분경합 등으로 인근 감귤원 피해 발생에 따라 정비를 통해 고품질
 감귤 생산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,804그루(밑둥 절단 기준, 파쇄작업 포함)

○ 사 업 비 : 83백만원(도비 50, 자부담 33)

○ 지원대상 : 감귤원 방풍수 밑둥 제거를 희망하는 농가

O 지원단가

- 밑둥절단: 17,600원/그루, 중간절단: 25,000원/그루

- **(선택사항)** 파쇄작업 : 12,000원/그루

- 방풍수 밑둥 또는 중간 제거 및 절단목 정리 지원

○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○ 신청장소 : 토지(과원) 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1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1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세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7, 3331)

18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

❖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및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기반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~12월

○ 사 업 량 : 15.6ha

○ 사 업 비 : 417백만원(도비 250, 자부담 167)

○ 지원대상 : 원지정비 사업, 1/2간벌 과원,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

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경영 농가

○ 지원단가 : 13,331천원/0.5ha

- 토양멀칭 : 8,781천원/0.5ha, 점적관수 : 4,550천원/0.5ha,

- 우산식지주대: 9,280천원/0.5ha(원지정비(성목이식 3년차) 사업 대상지만 해당)

○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※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사전예고(2023년 사업부터 적용)

-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대상지는 원지정비 지원사업(원지정비 지원사업 시행 전 성목이식,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포함) 참여 과원으로 제한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○ 신청장소 : 토지(과원)소재지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세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4, 3331)

19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 지원사업

 ❖ 감귤 수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에 대하여 수출용 감귤 포장재비를 지원하여 물류비 부담 경감으로 감귤 수출 확대 및 가격안정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300,000매

○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150, 자부담 150)

○ 지원대상 : 노지감귤을 수출하는 생산자단체 및 농업법인

○ 지원비율 : 자체재원 50%, 자부담 50%

- 지원기준 : 1,000원/상자당 *상자별 가격상이

- 지원자재 : 골판지 및 플라스틱 감귤상자(3kg이하 소포장상자 제외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O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6, 3331)

20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사업

❖ 만감류(한라봉, 천혜향)의 완숙 시기인 3월이후 고품질 만감류 출하를 유도하여 물량 조절 및 가격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참여농가의 가격불확실성, 감모, 기상적 여건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해 장려금 지급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. ~ 7월

O 사 업 량 : 400톤

○ 사 업 비 : 200,000천원

○ 지원대상 : 3월 이후 품질기준 이상의 만감류(한라봉, 천혜향)를

출하하는 농가(군납, 수출 포함)

- 품종별 지원대상 품질기준

구 분	지원 대상 품질 기준(3월이후 출하시점)
한라봉	o 당도 13.0브릭스(°Bx) 이상 산함량 1.1퍼센트 이하 과중 : 250g 이상
천혜힝	o 당도 13.0브릭스(°Bx) 이상 산함량 1.1퍼센트 이하 과중 : 200g 이상

○ 지원단가 : 500원/kg 이내, 농가당 10,000kg이내 (※ 합격물량에 따라 변동가능)

○ 지원비율 : 자체재원 100% (정액지원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월 중

○ 신청장소 : 각 지역 농·감협 유통센터, APC등

○ 신청방법 :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신청서 제출

※ 신청기간,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.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문의 제주시 농정과 감귤팀(☎ 728-3333, 3331)

[식품산업 분야]

1 1촌 1명품 브랜드 육성 사업

❖ 농산물 소비시장 변화에 맞춘 마을별 특화작물 홍보마케팅 지원으로 제주산 농산물 시장 경쟁력 제고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품목 명품화 지원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O 사업기간 : 2022. 1월~12월

○ 사 업 량 : 3개 마을

○ 사 업 비 : 33.600천원 (보조 30.000, 자부담 3.600)

○ 지원대상 : 지역별 특화작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자 하거나,

기존에 보유한 브랜드의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마을회

○ 지원내용 : 특화작물 브랜드 개발 및 홍보마케팅 강화 지원 [브랜드개발] 브랜드 BI(로고, 마스코트 등) 및 포장디자인 개발 [홍보마케팅] 홈페이지 구축, SNS마케팅, 광고제작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O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2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사업

❖ 코로나 이후 비대면・디지털 경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및 농식품에 대하여 비대면 마케팅 지원을 통해 판매 방식 변화 적응 유도 및 판로 다양화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0개소

○ 사 업 비 : 167,000천원 (보조 150,000, 자부담 17,000)

○ 지원대상 : 지역브랜드를 보유한 농업경영체, 마을단체, 생산자단체

O 지원내용

- 라이브커머스* 제작·운영 지원

* 라이브커머스 : 실시간 방송으로 판매자가 제품을 판매하고, 소비자는 다양한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제시하며 구매하는 거래 방식

- 온라인 홍보비(라이브 방송 판매 사전 홍보 마케팅, 키워드광고, 상세페이지 제작 등) 지원

- 라이브 방송 상품에 대한 포장재비, 배송비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O 신청장소: 제주시 농정과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

❖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한 6차산업화 지원으로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 향토산업을 육성하고 농업활성화를 통한 자율 발전 및 농업소득 증대 기반 마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3개소

○ 사 업 비 : 500,000천원(보조 300,000, 자부담 200,000)

- 개소당 사업비 : 166,700천원(보조 100,000, 자부담 66,700) 이내

○ 지원대상 : 농업법인, 생산자단체, 농산물 가공업체

※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,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가공업체(가공품 주원료 : 제주시 지역농산물)

※ 6차산업 = 1차(농산물 생산) × 2차(제조·가공) × 3차(체험·관광·서비스)

○ 지원내용 :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(체험)시설 구축 또는 기계·장비 구입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신청기간 : 2022. 1. 4 ~ 1. 19

○ 신청장소 : 제주시 농정과

○ 신청방법 : 사업신청서 작성·제출

4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

❖ 초등학생의 식습관 개선 등 국민 건강증진과 국산 제철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초등돌봄교실을 대상으로 과일간식 지원

□ 지원근거

○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6조(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)

□ 사업내용

O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과일간식 121,050개, 교육교재 4,000부

O 사 업 비 : 242백만원(국비 121, 도비 121)

○ 지원대상 :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학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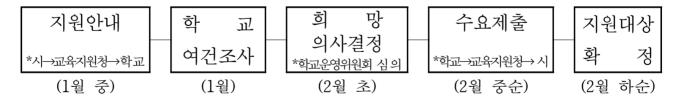
○ 사업내용 : 컵과일 형태의 과일간식 및 식생활 교육교재 제공

- 1인당 120~150g(1,900원) 컵과일을 연간 30(주1~2회) 공급

※ 신청기간. 지원단가 등은 2022년 사업계획 확정시(2022, 1월중) 변경될 수 있음

□ 과일간식 공급 절차

○ 지원대상 돌봄교실 선정 : 2022. 1월



- 과일간식 가공업체 선정 : 2022. 2월 말
 - (농식품부) 전국 공모로 적격업체 고시 → (도 감귤진흥과) 공급업체 선정
- 과일간식 공급 실시 : 2022. 3월 ~ 12월 (예산범위 내 연간 30회 이상)

5 기본형(소농, 면적) 공익직불사업

❖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, 농촌유지, 식품안전 등 농업·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 업 량 : 17,100농가

○ 사 업 비 : 25,726백만원(기금 100%)

○ 지원대상 : '16 ~ '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

※ 신규대상 :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농업에 종사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

○ 대상농지 : '17 ~ '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

○ 대상품목 : 농지에서 재배하는 모든 농산물(휴경 및 시설면적 포함)

○ 지원단가

- 〈소농〉 농가당 120만원 지급

- 〈면적〉 경작면적 구간별로 구분하여 역진적인 단가 적용

d A	1구간 (2ha이하)	2구간 (2~6ha)	3구간 (6ha초과)
밭농업 농지	134만원/ha	117만원/ha	100만원/ha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2월

○ 농가 사업신청 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3월 ~ 5월 예정 (※ 별도공고)

○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및 지급요건 검증(지자체) : 2022. 6월 ~ 10월

○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2022. 11월 ~ 12월

6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(초지)

❖ 읍면지역의 초지에 사료작물 및 목초를 재배하고 마을경관보전 활동으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 및 유지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□ 사업내용

O 사 업 량 : 1,160ha

○ 사 업 비 : 522백만원(기금 418 도비 104)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초지에서 목초 및

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가

※ 제외대상 :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

○ 대상초지 : '17 ~ '19년 중 1회이상 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받은 초지

○ 지원기준 : 450천원/ha(국비 80%, 지방비20%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) : 2021. 4월

○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사업신청 접습마을 → 읍·면: 2021. 5월 ~ 6월

※ 2023년 사업신청 : 2022. 4월(마을 경관보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제출)

○ 사업면적 배정 및 대상지구 선정(농식품부 → 시) : 2021. 11.~12월

○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: 2022. 1월

○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 : (동계) 2022. 5월 (하계) 2022. 10월

○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(동계) 2022. 7월 (하계) 2022. 12월

7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(농지)

❖ 지역별 특색 있는 준경관작물 재배와 마을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농촌(농지) 경관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 업 량 : 22.8ha

○ 사 업 비 : 38,720천원(기금 19,360 도비 19,360)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보전작물을 재배하는 농가

※ 제외대상 :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 37백만원 이상인 농업인

○ 대상농지 : 지역축제·체험·관광 등 도·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가 가능하고 집단화된 농지

○ 지원기준 : 경관작물 1,700천원/ha, 준경관작물 1,000천원/ha(국비 80%, 지방비 20%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O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) : 2021. 4월
- 마을 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및 시업신청 접수(마을 → 읍·면): 2021. 5월 ~ 6월
 - ※ 2023년 사업신청 : 2022. 4월(마을 경관보전위원회 구성 및 사업계획 제출)
- O 사업면적 배정 및 대상지구 선정(농식품부 → 시) : 2021. 11.~12월
- 마을경관보전협약 체결 : 2022. 1월
- 이행사항 점검(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): (동계) 2022. 5월 (하계) 2022. 10월
-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(동계) 2022. 7월 (하계) 2022. 12월

8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

 ❖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 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, 토양생태・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

□ 사업내용

O 사 업 량 : 365ha

○ 사 업 비 : 400백만원(국비 100%)

- 지원내용 : 친환경농업 도입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
 - * 지급회수(농지별) : 유기 5년간(5회), 무농약 3년간(3회)
 - *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(5회)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 유기직불금의 50%를 기한없이 지속 지급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또는 농업법인
- 지원단가(ha당): 유기 〈과수〉 1,400천원, 〈채소·특작·기타〉 1,300천원 무농약 - 〈과수〉 1,200천원, 〈채소·특작·기타〉 1,100천원 유기지속 - 〈과수〉 700천원, 〈채소·특작·기타〉 650천원
- 지급한도 : 농가당 최소 0.1ha 이상 최고 5ha 이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농식품부 사업시행지침 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1월
- 농가 사업신청 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3월 예정 (※ 별도 공고)
- 친환경 이행사항 점검(친환경인증기관) : 2022. 5월 ~ 11월
- 농가별 직불금 지급(시 → 농가) : 2022. 12월

[원예특작 분야]

1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

- ❖ 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력증진, 농약·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
- ❖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

□ 지원근거

○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

□ 사업내용

- O 사 업 량 : 573ha
- 사 업 비 : 860백만원(국비 172, 지방비 258, 자담 430)
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- 사업단가 : 유기인증 200만원/ha, 무농약인증 150만원/ha, 일반 100만원/ha
- 사업대상 : 농지에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자와 친환경유기농업 자재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 - 선정 우선순위 : 유기인증 농지 〉 무농약인증 농지 〉 일반 농지
 -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하고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
- 지원자재 : 기계유유제, 석회보르도액 등
- 지원내용 : 「친환경유기농업자재」로 등록 고시된 농자재
 - 녹비작물종자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
 - 천적(25종) : 시설재배 농가만 해당
 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고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 -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친환경유기농업자재지원 농가별 신청접수(시 → 읍면동): 2021. 11 ~ 12월
- O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통보(시 → 농협, 읍면동): 2022. 3 ~ 4월
- 농가별 사업추진 : 2022. 4 ~ 12월

2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

- ❖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은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
- ❖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 및 청정 농업환경 유지·보전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- O 사 업 량 : 67농가
- 사 업 비 : 333백만원(도비 200, 자담 133)
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친환경 인증농가
 - 농가당 지원하도 5백만원 이하(보조 3백만원)
- 지원내용 :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및 장비 패키지 지원 (미생물 배양기, 농업용 동력운반차, 과수 전정가위 등)
 - 1백만원 이상 품목에 한함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): 2022. 1. 4 ~ 1. 19
- O 사업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사업추진 : 2022. 3 ~ 10월

3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지원사업

❖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있어 청정제주 친환경 웰빙기능성 농산물을 생산가공 유통처리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자조직체를 육성, 농가 소득증대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O 사 업 량 : 1개소

○ 사 업 비 : 200백만원(도비 140, 자담 60)

- 지원조건 : 보조 70%, 자담 30%

○ 지원대상 :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친환경인증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생산(보관)시설지원 - 건조실, 냉동보관실, 동결건조기 설치

제품가공시설지원 - 분쇄기, 상품포장시설, 식품제조시설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)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
○ 사업추진 : 2022. 3 ~ 10월

4 친환경·웰빙작물 생산·유통단지 조성사업

❖ 농약·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통한 청정한 농업환경 유지·보전과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으로 친환경농업육성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O 사 업 량 : 1개소

○ 사 업 비 : 340백만원(도비 238, 자담 102)

- 지원조건 : 보조 70%, 자담 30%

○ 지원대상 : 친환경농업규모 5ha이상, 시업익년까지 친환경신규인증 3ha이상 가능한 조직체, 지역에서 생산되는 웰빙기능성작물 5ha이상인 조직체로서 사업익년까지 친환경 또는 GAP인증 3ha이상 신규인증이 가능한 조직체(웰빙작물 : 자황벼, 흑미, 검은깨, 흑대두, 기장, 차조, 수수, 메밀, 보리, 특약용작물)

○ 지원내용 : 친환경농자재 생산 시설·장비, 친환경 유기농축산물 생산 시설·장비, 친환경유기농 농산물 유통 시설·장비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)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
O 사업추진 : 2022. 3 ~ 10월

5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사업

❖ 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 채소・화훼 농가의 경영비부담 경감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위해 에너지 절감형 난방・ 보온시설 설치 지원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(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기능한 발전)

□ 사업내용

- O 사 업 량 : 4개소
- 사 업 비 : 142백만원(국비 28, 도비 43, 융자 43, 자부담 28)
- 지원대상 : 내재해형 시설 채소·화훼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※ 제외대상 : 신규·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(블루베리, 망고 등 열대과수) 제외
- 지원단가: 다겹보온커튼(수평권취식) 1ha(10,000㎡)당 130,000천원 등 (실단가 적용: 사업시행시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)
 - 지원조건 : 국비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- 지원내용 : 다겹보온커튼, 자동보온덮개, 순환식수막재배시설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: 2022. 1 ~ 2월
 - 2022년 사업 수요조사 시 예비사업자 우선 지원
-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: 2022. 1 ~ 12월
- 2023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 : 상반기 2022. 3월

하반기 - 2022. 7 ~ 8월

6 신재생에너지시설(공기열) 지원사업

◆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분야 적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

□ 지원근거

○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8조(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)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2개소
- 사 업 비 : 240백만원(국비 96, 도비 72, 융자 48, 자부담 24)
- 지원대상 : 내재해형 시설 채소·화훼 농업인·농업법인·생산자단체 ※ 제외대상 : 신규·수입 대체성이 높은 품목(블루베리, 망고 등 열대과수) 제외
- 지원단가 : 공기 대 공기(공급) : 617천원/kw 공기 대 물(공급) : 865천원/kw
 - 지원조건 : 국비 40%, 도비 30%, 융자 20%, 자부담 10%
- 지원내용 : 채소·화훼 하우스 시설에 공기열 냉·난방시설 지원 ※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계약 체결하여 사업추진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: 2022. 1 ~ 2월
 - 2022년 사업 수요조사 시 예비사업자 우선 지원
-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: 2022. 1 ~ 12월
- 2023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: 상반기 2022. 3월

하반기 - 2022. 7 ~ 8월

7 채소·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(자동)1폐기, 환풍기 등 지원

❖ 채소·화훼 시설재배 농가의 농작업 생력화 및 노동력 절감으로 농업 경쟁력 제고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 업 량 : 22개소

○ 사 업 비 : 133백만원(도비 80, 자부담 53)

○ 지원대상 : 채소화훼 비닐하우스,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부담 40%

○ 지원단가 :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준 단가 적용

※ 지원상한 :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, 사업신청량(하우스 동수 등)에 따라 조정 가능

○ 지원내용 : 자동개폐기, 화풍기 등 지원

- 농가당 1품목만 신청 가능

- 비상발전기, 온풍난방기 : 농가당 1대 지원

- 자동개폐기 : 신청 하우스 동수에 따라 대수 조정, 측면 지원 제외

- 환풍기 : 2동당 1대 기준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대상자 확정 : 2022. 2 ~ 3월

O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8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사업

❖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품목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의 新소득원으로 발굴하여 농업경쟁력 강화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- O 사 업 량 : 2개소
- 사 업 비 : 4,500백만원(도비 2,700, 자담 1,800)
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지원대상 : 정예소득 작목단지 육성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(농협)
- 육성(지원)품목 : 열대·아열대 채소류 및 기타과수, 화훼류 등
- 지원내용 : 개소당 하우스시설(3ha이상), 농산물 생산·유통시설 및 장비 등 일괄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신청·접수(농협→시): 2022. 1월
- 사업신청자 심사(심의위원회 구성) 및 대상자 선정 : 2022. 2월
-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(시 → 농협): 2022. 3월
-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9 친환경비료(발효액비) 지원사업

- ❖ 농림 축·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및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
- ❖ 환경친화적인 자원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7,500통
- 사 업 비 : 300백만원(도비 150, 자담 150)
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 - ※ 신청량에 따라 보조비율 조정될 수 있음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정보(필지)를 등록한 농업경영체
- O 대상자 우선순위 : 유기인증 > 무농약 > 일반농업
 - 필지별 사업량(대상자)확정
 -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필지중복 선정 안됨.
- 지원단가 : 10L 1통당 2만원 지원
- 지원내용 : 친환경발효액비(유기농업자재)
 -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공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 : 2022. 1. 4 ~ 1. 19
- 사업대상자 확정·통보(시 → 농협, 읍면동): 2022. 2월
- O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10 마늘토양소독제 지원사업

❖ 마늘재배 포장의 병해충을 방제하고 연작장해를 막아 건전한 토양을 조성하여 마늘의 품질향상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사 업 량 : 19ha

○ 사 업 비 : 66백만원(도비 40, 자담 26)

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구마늘 재배농가

○ 지원단가 : 1,000m²당 360,000원 범위 내(도비 216,000 자담 144,000)

- 사업 신청기준 : 1,000㎡ 당 토양 소독제 6포(30kg) 신청

- 농가당 1,000㎡ ~ 5,000㎡ 신청

O 지원내용 : 마늘토양소독제 약제구입비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농가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 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(시 → 농협, 읍면동) : 2022. 2월

○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| 11 |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

❖ 농업기술센터 채소작물 재배실증 과정을 거친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소비 다양화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357롤
- 사 업 비 : 50백만원(도비 30, 자담 20)
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노지수박, 단호박 재배농가
- 지원단가: 1,980m²당 140,000원(도비 84,000, 자담 56,000)
 - 농가당 1,000 m² ~ 10,000 m² 신청 ※ 1,980 m² 당약 1롤(500 m) 소요
- O 지원내용 : 노지수박, 단호박 생분해성 멀칭필름 구입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: 2022. 1. 4 ~ 1. 19
-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(시 → 농협, 읍면동): 2022. 2월
-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12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

◆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하여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일반원예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여 원예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구축

□ 지원근거

○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3개소
- 사 업 비 : 125백만원(기금 25, 도비 37, 융자 38, 자부담 25)
 - 지원조건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- 지원대상 : 채소화훼류 등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·농업법인· 생산자단체
 -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및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
- 지원단가 : 집행시 실 단가 적용하되, 원가계산전문기관에서 발급받은 원가계산서 제출(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)
- 지원내용 : 양액재배시설 자동개폐기, 환풍기, 무인방제기 등 스마트팜 기반시설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대상자 및 지원계획 확정 : 2022. 1 ~ 2월
 - 2022년 사업 수요조사 시 예비사업자 우선 지원
- 사업 시행 및 보조금 지급 등 사업 마무리 : 2022. 1 ~ 12월
- 2023년 사업 수요조사 접수(예정) : 상반기 2022. 3월

하반기 - 2022. 7 ~ 8월

13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

- ❖ GAP 인증 농가의 출하 전 안전성 검사를 통해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확대 도모
- ❖ GAP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감소 및 인증참여 확대를 통해 안전한 농식품 공급

□ 지원근거

○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(농산물우수관리인증), 제110조(자금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242건
- 사 업 비 : 60백만원(국비 30, 도비 30)
 - 지원조건 : 국비 50%, 도비 50%
- 지원자격 : 신청일을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(GAP 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, 그 비용을 부담한 자에게 지원하되 다른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받거나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)
- 지원한도 : 신청일자를 기준으로 인증을 받은자가 부담한 검사비용 지원
- 지원내용 : 농산물의 잔류농약·중금속, 토양, 용수 검사 수수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O GAP 안전성 검사비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: 2022. 1 ~ 12월
- O GAP 안전성 검사비 교부(시 → 농가) : 2022. 1 ~ 12월

14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

❖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해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여 국민건강, 환경보전,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고 친환경농산물의 판로를 확보

□ 지원근거

-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, 제7조
-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9조, 제10조

□ 사업내용

- O 사 업 량 : 임산부 2,900명
- 사 업 비 : 1,392백만원(국비 557, 도비 557, 자부담 278)
 - 지원조건 : 국비 40%, 도비 40%, 자담 20%
- 지원대상 : '21.1.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
 - ※ 영양플러스사업 지원을 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- 지원내용 : 임산부 1인당 48만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지원

(자부담 20% 포함)※ 꾸러미 구매 한도 및 횟수:

1회 10만원, 월 4회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지원 대상자 신청·접수(임산부 → 읍면동 → 시) : 2022. 1 ~ 2월
- 지원대상자 확정·통보(시 → 공급업체, 임산부) : 2022. 1 ~ 3월
- O 사업추진 : 2022. 1 ~ 12월

15 채소·화훼하우스 스마트팜 시설보급 지원사업

 ❖ 채소ㆍ화훼 자동화온실 등에 시설물 자동ㆍ원격제어를 통한 온ㆍ습도 관리 등 최적 생육환경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 시설 지원을 통한 농산물 생산성 향상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- 사 업 량 : 4개소
- 사 업 비 : 83백만원(도비 50, 자부담 33)
 - 지원조건 : 도비 60%, 자부담 40%
- 지원대상 : 채소·화훼류 재배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·농업 법인·생산자단체
 -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소속 및 공동선별 참여 농업경영체
- 지원내용 :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
 - 센서장비, 영상장비, 제어장비 등
 - ※ ICT기반 구축 시설·장비(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대상)와 제어장비 동시 설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 시): 2022. 1. 4 ~ 1. 19
- O 사업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O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16 채소・화훼 비닐하우스시설 지원사업

 ❖ 청정제주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시설채소·화훼 생산시설의 단지화를 통한 다양한 신선농산물의 연중 생산 공급 그리고 고품질 원예작물 생산기반 조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및 경쟁력 제고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 ~ 12월

○ 사 업 량 : 12개소

○ 사 업 비 : 785백만원(도비 550, 자부담 235)

○ 지원대상 : 시설하우스에 밭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(과수제외)
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 청년창업농·후계농

- (2그룹) 일반농가

○ 지원기준 : 지원기준량(농가당)1,650㎡범위내

구 분		농가당 사업비	보조한도	보조율(%)	
하우스	1그룹		82,500천원 이내	57,750천원 이내	70
시설	2=	1룹	82,500천원 이내	49,500천원 이내	60
	1 기 린	50톤	21,142천원 이내	14,800천원 이내	70
물탱크	1그룹	100톤	31,626천원 이내	22,138천원 이내	70
시설	2그룹	50톤	21,142천원 이내	12,685천원 이내	(0
		100톤	31,626천원 이내	18,976천원 이내	60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동 →시)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대상자 확정(시 → 읍면동): 2022. 2월

O 사업추진 : 2022. 3 ~ 12월

[유통지원 분야]

1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사업

❖ 농경지 내 암반으로 인한 경작 불편 해소와 영농 기계화 기반 마련으로 농경지 활용도 및 농업 생산성 증대 등 농업 환경 개선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~12월
- 사 업 량 : 179개소
- 사 업 비 : 1,250백만원(도비 750, 자부담 500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 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 - (2그룹) 일반농가
- 지원내용 : 200㎡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지원
- 지원기준 : 7,000천원 / 개소당(보조한도 4,200천원, 보조율 60%) *㎡당 35천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1월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1. 4 ~ 1. 19
- O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사업 추진 : 2022. 3월~12월

2 밭작물 기계화 촉진 지원사업

❖ 농촌지역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가에 소규모 농작업 기계 구입을 지원하여 농작업 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업생산 안정화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사 업 량 : 143대
- 사 업 비 : 1,430백만원(도비 1,000, 자부담 430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 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 - (2그룹) 일반농가
- 지원기종 : 경운기, 관리기, 비료 살포기, 로타베이터 등
- 지원내용 : 소형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(농가당 1대)
- 지원기준 : 농기계 구입비의 60~70% 보조금 지원

구 분	농가당 사업비	보조금 지원한도	적용 보조율(%)
1그룹	10,000천원 이내	7,000천원 이내	70
2그룹	10,000천원 이내	6,000천원 이내	60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1월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1. 4~1. 19
-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3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

- ❖ 자가 육묘 기반 확충으로 영농비 절감 및 영농환경 유연성 확보
- ❖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적정 재배 시기 조절을 통한 영농환경의 유연성 확보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2월 ~ 12월
- O 사 업 량 : 31개소
- 사 업 비 : 429백만원(도비 300, 자부담 129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가
 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 - (2그룹) 일반농가
- 지원내용 : 165㎡ 이하 농가 보급형 육묘장 시설비 지원
 - 기초공사, 골조공사, 피복공사, 개폐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
- 지원기준 : 육묘장 시설비 60~70% 보조금 지원

구 분	농가당 사업비	보조금 지원한도	적용 보조율(%)
1그룹	13,860천원 이내	9,702천원 이내	70
2그룹	13,860천원 이내	8,316천원 이내	60

- m²당 단가 : 84,000원(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1월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2. 1. 4 ~ 1. 19
-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4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

❖ 채소 등 밭작물 재배 농가에 대한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을 통한 신선한 농산물 공급과 출하 시기 조절로 수급 안정 및 소득 안정화 도모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- 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사 업 량 : 21개소
- 사 업 비 : 357백만원(도비 250, 자부담 107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 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 - (2그룹) 일반농가
- 지원내용 : 16.5㎡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또는 장비
- 지원기준 : 저온저장고 시설비 60~70% 보조금 지원

구 분		농가당 사업비	보조금 지원한도	적용 보조율(%)
1그룹	시 설	17,325천원 이내	12,127천원 이내	70
	장 비	13,200천원 이내	9,240천원 이내	70
2그룹	시 설	17,325천원 이내	10,395천원 이내	60
	장 비	13,200천원 이내	7,920천원 이내	60

- m²당 단가 : (시설) 1,050천원, (장비) 800천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: 2022. 1월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1. 4~1. 19
-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5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사업

❖ 농경지에 대한 관수시설(스프링클러) 지원으로 관수작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적기 수분공급을 통한 농작물 상품성 향상 및 가뭄피해 최소화로 농업생산 안정화 도모

□ 지원근거

-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1조
-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

□ 사업내용

-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O 사 업 량 : 60ha
- 사 업 비 : 215백만원(도비 150, 자부담 65)
-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 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 - (2그룹) 일반농가
- 지원내용 : 밭작물 관수시설(스프링클러, 분사호수) 자재 구입비(설치비 제외)
 - 농가당 0.1ha(1,000 m²) 이상 ~ 1ha(10,000 m²)이하 지원
- 지원기준 :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60~70% 보조금 지원

구 분	농가당 사업비	보조금 지원한도	적용 보조율(%)
1그룹	3,570천원 이내	2,499천원 이내	70
2그룹	3,570천원 이내	2,142천원 이내	60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- 사업 추진계획 수립·통보(시 → 읍·면·동) : 2022. 1월
-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: 2022. 1. 4 ~ 1. 19
-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- 사업 추진 : 2022. 3월~12월

6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

❖ 채소 등 농산물 주산지에 집하·선별·저장 등에 필요한 유통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상품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3개소(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)

○ 사 업 비 : 1,084백만원(도비 650, 자부담 434)

○ 지원대상 : 농업법인(영농조합, 농업회사법인), 생산자단체(지역농협)

○ 지원규모: 개소당 보조금 100백만원 이내, 보조율 60%

○ 지원내용 :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설치(구입)비 지원

- 시설 : 집하장, 저온저장고, 선별시설, 건조시설 등

- 장비 : 지게차, 파렛트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3월

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7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지원사업

 ❖ 도내・외에서 열리는 제주산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제주산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판매촉진을 통해 농가 소득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개소(신청량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조정)

○ 사 업 비 : 34백만원(도비 30, 자부담 4)

○ 지원대상 : 생산자단체(농업법인, 지역농협), 농업인단체

○ 지원규모 : 개소당 보조금 15백만원 이내, 보조율 90%

○ 지원내용 : 도내 및 도외 농산물 직거래장터(또는 직판행사) 운영 경비 지원

- 판매 부스(천막)설치비, 현수막 제작비, 직판행사 홍보비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3월

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8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

❖ 규모화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업량: 95대

○ 사 업 비 : 1,670백만원(도비 1,000, 자부담 670)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

○ 지원기준 : 농가당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형농기계 1대

○ 지원내용 : 중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※ 보조율 60%

- 지원기종 : 정식기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곡물건조기, 보리짚제초기 및 드론 *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(파종기, 수확기, 제초기) 지원 가능

- 지원제외 : 농산물 유통·가공 장비(저온저장고, 선별기, 지게차, 등), 및 과수 관련 장비 등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: 2022. 1. 4 ~ 1. 19

○ 사업 대상자 확정 : 2022. 2월

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9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

◆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비 지원을 통해 농촌지역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 해소 및 농가 영농비용 감소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,593ha

○ 사 업 비 : 234백만원(도비 140, 자부담 94)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

-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제주시 소재 농지에 한해 지원

※ 농가가 직접 드론 이용하여 살포하거나 일반 농약살포 대행한 경우는 지원 제외

- 지원내용 : 드론을 이용한 농약 방제 대행비 일부 지원
- O 지원기준
 - 지원단가 : 90천원/ha(자체재원 54, 자부담 36) ※ 보조율 60%(3.3㎡당 18원 예정) ※ 일부 농협의 경우 자체적으로 방제비 지원
 - ⇒ 지원액은 농협별로 상이(미지원 농협도 있으며, 일반적으로 평당 20원 내외)
 - ※ 3.3㎡당 방제비(50원) 중 농협 지원액(20원) 차감 ⇒ 30원의 60%(18원) 지원 예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모 : 2022. 1월

○ 사업 대상자 확정(대상 농지 선정) : 2022. 2월

O 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10 유기질비료 지원사업

❖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・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및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

□ 지원근거

○ 비료관리법 제7조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36,340톤

○ 사 업 비 : 3,482백만원(자체재원 3,482)

○ 지원대상 :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

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유기질비료(3종) 및 부숙유기질비료(2종) 지원

O 지원단가

- 유기질비료 1,700원 (보전금 1,000원 + 도비 700원) 퇴비 1.300~1.600원 (보전금 700~1,000원 + 도비 600원)

※ 도내산 퇴비인 경우는 300원(도비) 추가 지원

구 분	특등급	1등급	2등급
유기질비료(원/20kg)		1,700	
퇴비·가축분퇴비(원/20kg)	1,600 (1,900)	1,500 (1,800)	1,300 (1,600)

*()는 친환경 농산물 인증농가 지원단가(도비 300원 추가지원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O 사업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면·동) : 2021. 11월 9일 ~ 12월 8일

○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농가 배정 물량 확정 : 2022. 1월

○ 유기질비료 공급 : 2022. 1월 ~ 12월

11 토양개량제 지원사업

❖ 산성토양 및 유효균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・보전하여 친환경농업 기반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농지법 제21조(토양의 개량·보전)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5,395톤

○ 사 업 비 : 800백만원(국비 560, 도비 240)

○ 지원대상 : 제주시 소재 농지(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에 한해)를 경작

하는 농업인으로 토양개량제 공급 희망 농가('19년 기 신청)

○ 공급지역(3년 1주기) : (**'**22년) 구좌읍

○ 지원내용 : 규산질·석회질·패화석비료 전액 무상 지원(국비 70%, 도비 30%)

○ 지원기준 : 농업기술센터가 산정한 법정리·동별 농경지 단위면적당

소요량과 농가신청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 추가 신청·접수(농가 → 읍·면·동) : 2021. 11월 9일 ~ 12월 8일

○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: 2022. 1월

○ 토양개량제 농가 공급 : 2022. 3월 ~ 12월

12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지원사업

❖ 농촌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노동력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 추진 시 비료 적기 살포 등 사업효과 거양

□ 지원근거

○ 농지법 제21조(토양의 개량·보전),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3,500톤

○ 사 업 비 : 140백만원(국비 70, 도비 70)

○ 지원대상 :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선정농가 중 희망농가('22년 공급지역)

○ 공급지역(3년 1주기) : ('22년) 구좌읍

○ 지원내용 :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비 일부 지원

○ 지원기준 :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선정농가 중 희망농가에 대해 예산

범위 내에서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O 공동살포 희망농가('22년 공급지역 내) 수요조사(농가 → 읍면·동) : 2022. 1월

○ 공동살포 희망농가 대상자 선정(지역농협별): 2022. 2월

○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실시 : 2022. 3월 ~ 12월

13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

❖ 최근 1인 가구 증가로 소규모 포장으로 변화 되어 농산물 유통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포장재비 지원함으로써 나아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80천매

○ 사 업 비 : 280백만원(도비 140, 자부담 140)

○ 지원대상 : 제주산 신선농산물을 소포장(5kg 이하)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등

○ 지원내용 : 신선농산물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 구입비 지원

- 지원 기준 : 소포장재비 구매(제조) 단가의 50% 보조 지원

- 지원 대상 : 포장규격 5kg이하의 골판지 및 플라스틱 상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공모 : 2022. 1월

○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: 2022. 2월

○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14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

❖ 채소류 등 산지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의 농산물 유통 포장자재비 지원을 통한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

□ 사업내용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520천매

○ 사 업 비 : 520백만원(도비 260, 자부담 260)

○ 지원대상 :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(공선회, 영농조합법인 등)에

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
○ 지원내용 : 공동선별 농산물 출하(유통)에 사용되는 포장자재 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 : 포장재비 구매 단가의 50% 보조 지원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신청 공모 : 2022. 1월

○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사업량 확정 : 2022. 2월

○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 : 2022. 3월 ~ 12월

15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

❖ 매해 과잉생산이 우려되는 월동채소의 가격 불안정 해소 및 감자 재배 농가 경영비 부담 감소를 위한 우량종서 보급 확대

□ 지원근거

○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·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

□ 사업내용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58톤

○ 사 업 비 : 334백만원(도비 200, 자부담 134)

○ 지원대상 : 감자 종서(채종포용)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

○ 지원내용 :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

○ 지원단가 : 42천원/20kg(보조 25.2, 자부담 16.8) ※ 지원한도 : 2톤 이내/ha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·접수 : 2022. 3월

○ 대상자 확정, 업체선정 : 2022. 5월

○ 사업 추진 및 정산 : 2022. 5월 ~ 12월

[농지관리 분야]

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사업

❖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명한 농업 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・교육・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정예 농업 인력으로 육성

□ 지원근거

○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0조(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신청기간 : 12월 중순 ~ 다음연도 1월
- O 신청자격
-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~ 만 50세 미만인 자
 - **※** '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71.1.1 ~ 2004.12.31. 출생자
-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·군수· 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(1시간 이상)을 이수한 자
- 지원내용 : 농지구입 및 임차, 시설 설치 및 임차,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, 기타자금(홈페이지 개발. 농기계 구입비 등)
 - ⇒ 사업 대상자 선정 후 5년 이내 사업 추진시 최대 3억원까지 융자지원(상환 :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. 금리 : 고정2%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읍·면·동	제주시 농정과	평가기관		제주특별자치도	제주시 농정과
시업 신청 접수	서류평가 및 추천대상자 선정 및 도 추천	: 지자체 평가결과 검증	=	추천대상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보고	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지원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(☎ 728-3096, 3091)

2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

❖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시스템 개선 및 정예 인력 육성

□ 지원근거

- 「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제24조(기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)
- [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| 제10조(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신청기간 : 12월 중순 ~ 다음 연도 1월 중순
- O 신청자격
 -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~ 만 40세 미만인 자
 - * '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: 1982.1.1 ~ 2004.12.31 출생자
 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농업경영정보(경 영주)를 등록한 독립 경영 3년 이하(독립경영 예정자 포함)의 농업인
 - 사업 신청을 하는 읍·면·동에 실제 거주(주민등록 포함)하는 자
- 지원기간 및 내용

구분	지원 1년차 (2021.4 ~ 2022.3)	지원 2년차 (2022.4 ~ 2023.3)	지원 3년차 (2023.4 ~ 2024.3)
독립경영 1년차	100만원(12개월)	90만원(12개월)	80만원(12개월)
독립경영 2년차	90만원(12개월)	80만원(12개월)	_
독립경영 3년차	80만원(12개월)	-	_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농립사업정보시스템(www.agrix.go.kr) 접속 후 메인화면의 '청년창업농 신청'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(접수) → 서류평가 후 추천 → 면접평가 및 후계농 선정심의회 심의 후 최종 대상자 확정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(☎ 728-3096, 3091)

3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 지원사업

❖ 농어촌민박시설의 CCTV 설치 지원을 통한 민박 이용객의 불안감 해소 및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민박문화 조성

□ 지원근거

○ 「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」 제5조 (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한 지원)

□ 사업내용

- O 사업신청 : 매년 1~2월
- O 신청대상
 - 신청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3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를 하고 1년 이상 운영 중인 자
- 지원내용 : 농어촌민박시설 CCTV설치비 지원
 - 개소당 사업비 : 1,600,000원 이내 (보조 : 50%, 자부담 : 50%)

□ 신청방법 및 절차

○ 사업신청 접수(시·읍·면) → 심사평가표에 의해 심사 및 순위명단 작성 (시·읍·면) →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(사업대상자 확정) → 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(행정시) →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(사읍면 → 민박업소)
 →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→ 사업완료 및 정산 (시·읍·면)

문의 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 (☎ 728-3096, 3091)

새해에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

농민수당 지원사업 신규 추진

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(728-3311)

지원근거: 「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」

- 농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·농촌환경을 조성
- 제주도 고유한 농업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

│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O 사 업 량 : 56,000명 (추정)

○ 사 업 비 : 224억원 (도 전체)

○ 지원대상 :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3년이상 계속 제주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

거주하며, 2년이상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전업 농민

○ 지원단가 : 농민 1인당 400,000원 (현금 또는 지역화폐)

※ 제외대상자

-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보험가입자
-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,700만원 이상인 자
-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하였거나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
-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기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
- ※ 지원기준은 2022년 사업 시행지침 확정 시 변경될 수 있음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농민수당 신설 : 농민 1인당 400,000원 지급
 - 전업농업인 자격조건에 적합한 자에 한해 지원

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시업 지원단가 상향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장 (728-3331)

연중 고품질 감귤 안전 생산과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으로 지속 성장하는 감귤산업 육성을 위하여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을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.

│ 사업개요

- O 대상사업: 비가림하우스, 원지정비 등 14개사업
- O 사 업 비 : 11,663,000천원(기금 2,333,000, 도비 4,039,000, 융자담 5,291,000)
- O 지원조건 : 기금 20%, 도비 30%, 융자 30%, 자부담 20%
 - ※ 원지정비지원사업 : 기금 20%, 도비 50%, 융자 20%, 자부담 10%
- O 지원대상 : 최근 5년 이내에 출하 실적이 있고, 감귤 생산량의 80% 이상을 3년이상 출하 약정한 농가
- O 지원제외
 - 전년도 6월 30일 기준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영체
 - 2012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
 - 농업 외 종합소득(본인)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
 - 임차 소농은 최근 3년간 농업경영체, 농지원부에 0.5ha 초과 재배면적 등재
 - * '20년부터 감귤 비가림하우스사업은 본인 명의 토지만 신청 가능

Ⅱ 2022년 세부사업 변경사항

- O 감귤 비가림하우스 지원한도 및 신청내역 추가
 - (추가) 신규하우스 신청시 난방기, 발전기, 환풍기, 송풍팬 선택 가능
 - (당초) 농가당 0.5ha ⇒ (변경) 농가당 3,300㎡ 이내 신청가능
 - (당초) 본인소유 토지만 신청 ⇒ (변경) 배우자 공동소유인 경우 승낙서 첨부 * 배우자 소득 3,700만원 이하, 농업경영체 등록 요건 충족해야 함
- O 감귤원 원지정비 신청내역 추가
 - (추가) 원지정비 기 사업농가 신규사업 신청 시 방풍망, 관수시설 우선순위

Ⅲ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❖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현대화사업 지원단가 상향 조정 (0.5ha 기준)
 - ▶ 비가림하우스 : (기존) 시설 191,000천원, 감리비 3,629천원 → (변경) 시설 228,106천원, 감리비 4,334천원
 - ▶ 원지정비(성목이식): (기존) 성목이식 29,390천원, 방풍수 4,620천원 → (변경) 성목이식 35,411천원, 방풍수 5,500천원

원지정비(품종갱신): (기존) 품종갱신 30,600천원, 방풍수 4,620천원 → (변경) 품종갱신 42,387천원, 방풍수 5,500천원

- ▶ **자동개폐기** : (기존) 7,820천원 → (변경) 8,280천원
- ▶ 비상발전기 : (기존) 20kw 9,200천원, 30kw 10,300천원 → (변경) 20kw 10,063천원, 30kw 10,690천원
- ▶ 관수(스프링클러-시설): (기존) 7,800천원 → (변경) 9,260천원,
 관수(점적관수-시설): (기존) 4,430천원 → (변경) 5,060천원
 관수(승강형살포기-시설): (신규)29,620천원
 관수(스프링클러-노지): 6,200천원(변동없음)
 관수(승강형살포기-노지): (신규) 19,520천원
- ▶ **방풍망** : (기존) 8,700천원 → 12,591천원 * 0.5ha당 250m까지 지원가능 ※ 단, 원지정비 농가('18~'22)농가에 한해서 0.5ha당 500m까지 지원가능
- ▶ **농산물운반시설** : (기존) 동력 5,200천원, 무동력 3,058천원 → (변경) 동력 5,560천원, 무동력 4,155천원
- ▶ **환풍기시설** : (기존) 9,750천원 → (변경) 10,270천원
- ▶ **송풍팬시설** : (기존) 수평식 10,640천원, 수직형공기교반기 12,920천원 → (변경) 수평식 12,920천원, 수직형공기교반기 13,680천원
- ▶ **온풍난방기** : (기존) 20만kcal 6,500천원 25만kcal 7,500천원 30만kcal 8,500천원 → (변경) 20만kcal 7,100천원 25만kcal 8,200천원 30만kcal 9,300천원
- ▶ **노후하우스 개보수** : (기존) 33,700천원 → (변경) 43,978천원

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단가 상향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장 (728-3331)

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과 가격 차별화를 통한 농가 조수입 증대를 위해 토양피복재배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하여 지원하게 됩니다.

│ 사업개요(지원내용)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15.6ha

○ 사 업 비 : 417백만원(도비 250, 자부담 167)

○ 지원대상 : 원지정비 사업, 1/2간벌 과원,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

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경영 농가

○ 지원단가 : 13,331천원/0.5ha

- 토양멀칭 : 8.781천원/0.5ha, 점적관수 : 4.550천원/0.5ha,

- 우산식지주대 : 9,280천원/0.5ha(원지정비(성목이식 3년차) 사업 대상지만 해당)

○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※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사전예고(2023년 사업부터 적용)

- 감귤원 토양피복자재 지원사업 대상지는 원지정비 지원사업(원지정비 지원사업 시행 전 성목이식, 우량품종갱신 지원사업 포함) 참여 과원으로 제한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토양피복자재 지원단가 상향 조정 (0.5ha 기준)
- (기존) 타이벡 10,541천원(토양피복 7,001, 점적관수 3,540) 우산식지주대 7,760천원 * 원지정비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
- (변경) <일반농가> 타이벡 13,331천원(토양피복 8,781, 점적관수 4,550), <원지정비농가(성목이식 3년차)> 타이벡 15,581천원(토양피복 9,981, 점적관수 5,600), 우산식지주대 9,280천원 * 원지정비 3년차 사업 대상지만 해당

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 확대

제주시 농정과 감귤팀장 (728-3331)

계획적인 방풍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에 파쇄작업을 선택적으로 추가 지원하게 됩니다.

│ 사업개요(지원내용)

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 업 량 : 2,804그루(밑둥 절단 기준, 파쇄작업 포함)

○ 사 업 비 : 83백만원(도비 50, 자부담 33)

○ 지원대상 : 감귤원 방풍수 밑둥 제거를 희망하는 농가

O 지원단가

- 밑둥절단: 17.600원/그루, 중간절단: 25.000원/그루

- **(선택사항)** 파쇄작업 : 12,000원/그루

- 방풍수 밑둥 또는 중간 제거 및 절단목 정리 지원

○ 지원비율 : 도비 60%, 자부담 40%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

- ❖ 방풍수 정비에 따른 파쇄작업 추가 지원 (감귤나무 1본 기준)
 - (기존) 밑둥절단 17,600원, 상단부절단 25,000원
 - (변경) 밑둥절단 17,600원, 상단부절단 25,000원,

파쇄작업 12,000원(선택사항) *22년 신규

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 확대 (지원대상 및 지원품목)

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(728-3351)

- ❖ 친환경농업 경영비 부담 해소 및 지력증진,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
- ❖ 농업 농촌의 환경보전과 소비자 보호차원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 장려

│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2022. 1 ~ 12월

○ 사 업 량 : 573ha

○ 사 업 비 : 860백만원(국비 172, 도비 258, 자부담 430) 보조율 50%

○ 지원대상 : 농지에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자와 친환경유기농업

자재를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이용하려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

○ 지원내용 : 「친환경유기농업자재」로 등록 고시된 농자재

- 녹비작물종자 : 헤어리베치, 녹비(청)보리, 호밀, 자운영

- 천적(25종) : 시설재배 농가만 해당

- 유기농업자재 :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고시 또는 품질인증 자재

-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지원

II 시 행일: '22. 1월

- ❖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및 신규신설
 - (지원대상) 기존 친환경인증 농가만 지원되었던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는 일반농가까지 확대 지원
- (신규신설)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

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

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

매해 과잉생산 우려되는 월동채소의 분산 출하를 통한 가격 불안정 해소 및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우량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

│ 사업개요

- O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- 사업량 및 사업비 : 158톤 · 334백만원(도비 200, 자부담 134)
- 지원대상 : 감자 종서(채종포용)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
- 지원내용 : 가을 재배용 감자 종서 구입비 일부 지원
- 지원기준 : 42천원/20kg(보조 25.2, 자부담 16.8) ※ 지원한도 : 2톤 이내/ha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감자 종서 구입비 지원사업 신규 추진
- (지원대상) 감자 종서(채종포용)를 필요로 하는 농가 및 영농조합법인
- (지원기준) 42천원/20kg의 60%(25.2천원) 지원 예정

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대상자 확대

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

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를 통한 생산유통 조직의 산지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 소득 증대

│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업량 및 사업비 : 520천매·520백만원(도비 260 자부담 260)

O 지원대상 :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(공선회, 영농조합법인 등)에

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
O 지원내용 : 공동선별 농산물 출하(유통)에 사용되는 포장자재

구입비 지원

- 지원기준 : 포장재비 구매 단가의 50% 보조 지원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농산물 품목별 공선회 조직 포장재비 지원사업 대상자 확대
- (기존)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(공선회)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- (변경) 품목별 생산유통 조직(공선회, 영농조합법인 등)에 가입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

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대상 농기계 확대

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

규모화된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기여

│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사업량 및 사업비 : 95대 · 1,670백만원(도비 1,000, 자부담 670)

○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

○ 지원기준 : 농가당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중형농기계 1대

○ 지원내용 : 중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※ 보조율 60%

- 지원기종 : 정식기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곡물건조기, 보리짚제초기 및 드론 * 트랙터 소유한 농가에 한해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(파종기, 수확기, 제초기) 지원 가능

- 지원제외 : 농산물 유통·가공 장비(저온저장고, 선별기, 지게차 등) 및 과수 관련 장비 등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중형 농기계 지원대상 기종 확대
 - (기존) 정식기, 이식기, 파종기, 수확기, 곡물건조기 등 5개 기종
 - (변경) 기존 5개 기종에 드론 및 보리짚제초기 지원대상 포함

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시업 지원단가 상향

제주시 농정과 유통지원팀장 (728-3341) 제주시 농정과 원예특작팀장 (728-3351)

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단가가 상향 조정됩니다.

│ 사업개요

O 사업기간 : 2022. 1월 ~ 12월

○ 소요예산 : 4,466백만원(도비 3,000, 자부담 1,466)

O 지원대상 : 농업경영체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가

- (1그룹) 소농, 고령농, 여성농, 귀농인, 친환경인증농가, 다문화농가, 청년창업농·후계농

- (2그룹) 일반농가

○ 지원사업: 경작지 암반제거, 소형농기계 구입, 소규모 육묘장, 소규모 저온저장고, 소규모 채소·화훼비닐하우스,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 등 6개 사업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사업 지원단가 상향 조정
- 농가 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: (기존) 65,920원/m² → (변경) 84,000원/m²
-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
 - · (기존) 시설 1,000원/m², 장비 758원/m² → (변경) 시설 1,050원/m², 장비 800원/m²
- 채소·화훼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: (기존) 40,000원/m² → (변경) 50,000원/m²

청년창업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 개정

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(728-3091)

│ 지침 개정 주요 내용

- 신청자격 : 연령, 영농경력, 병역, 거주지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음
 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. 다만,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* 할 경우는 신청 가능
 - * 폐업기한 : 영농개시(경영체등록) 전까지
-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다만,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 발표 이후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*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
 - * 퇴직기한 : 영농개시(경영체등록) 전까지
- O 의무교육 과정 이수
 - (필수교육) 2~3년차 20h
 - → 집합교육7h×2회, 현장지원단(지자체 간담회 및 자체 교육 등 포함)활동 6h
- 영농정착지원금의 경우 당해연도 선정자가 당해연도 내에 사업을 포기 하거나, 재산 및 과세소득 기준 따른 지원금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순위명부 상 차 순위자를 선정하여 정착지원금 지급
 - * 차순위 선정자도 영농경력에 따른 지원금 최장 3년간 동일 지급

II 시 행일: '22. 1월

- ❖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
- (신청자격) 영농개시 전 폐업·퇴직할 경우 영농개시 전까지로 기한 연장
- (의무교육) 현장지원단 활동 및 지자체 간담회 등 교육 포함하여 운영
- (차순위자 선정) 당해연도에 사업포기시 차 순위자 선정 규정

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 개정

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(728-3091)

│ 지침 개정 주요 내용

- 신청자격 :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대상자에서 제외
-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다만, 해당 지자체의 사업 공고문에 따른 사업 대상자 최종 선정발표이후에 해당 사업체를 폐업*할 경우는 신청 가능
 - * 위 해당 대상자의 경우 사업신청 시 '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' 제출 필요하며, 폐업기한은 영농개시(경영체등록) 전까지임
- 대출기준 : 대출(상환)기간 : 5년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
-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하며, 원금 상환기간은 10년 초과할 수 없음
-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는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 기간이 축소 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
- 지원대상
 - 하우스·온실 설치, 과수원조성, 버섯 재배사,
- 관수(농업용 관정 포함)시설 등 영농기반 시설의 설치
- 기존시설 개보수(객토・성토 포함)
- 임차보증금(3년 이상 임차에 한하며, 임차료 제외 등

Ⅱ **시 행 일 :** '22. 1월

- ❖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지침 개정
- (신청자격) 영농개시 전 폐업·퇴직할 경우 영농개시 전까지로 기한 연장
- (대출기준) 후계농 지원 대상자 대출기준 명확화
- (지원대상)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사용 용도 확대(현장의견 반영)

농지법 등 개정에 따른 단계별 시행

제주시 농정과 농지관리팀장 (728-3091)

2021년 8월 17일 「농지법」, 「농어업경영체법」, 「농어촌공사법」 등 농지관리 개선 관련 법률안 개정

│ 주요내용

- (농지법) 지자체 농지위원회 설치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, 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등 사후관리 강화,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등 투기적 수요 억제를 위한 핀셋규제 제도화
- 특히,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·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 제한,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 제한, 농지 강제처분 신속절차 신설 및 이행강제금 상향, 벌칙 강화 등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적용
- (농업경영체법) 사전신고제 도입, 법인 실태조사 강화, 부동산업 금지 및 금지된 부동산업 영위 시 벌칙 및 과징금 도입 등
 - 특히,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등은 공포 한 날부터 즉시 적용
- Ⅱ **시 행 일 :** '21. 8 ~ '22.8월

- ❖ 농지법, 농업경영체법 개정
- 농지 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, 농업법인 등의 농지 관련 불 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 등 농지 투기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